

# 일반노동자 관련 세무와 절세방안

---

# 목 차

---

1. 연말정산
2. 연금소득 과세
3. 퇴직소득 과세
4. 주요 Q&A
5. 기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

#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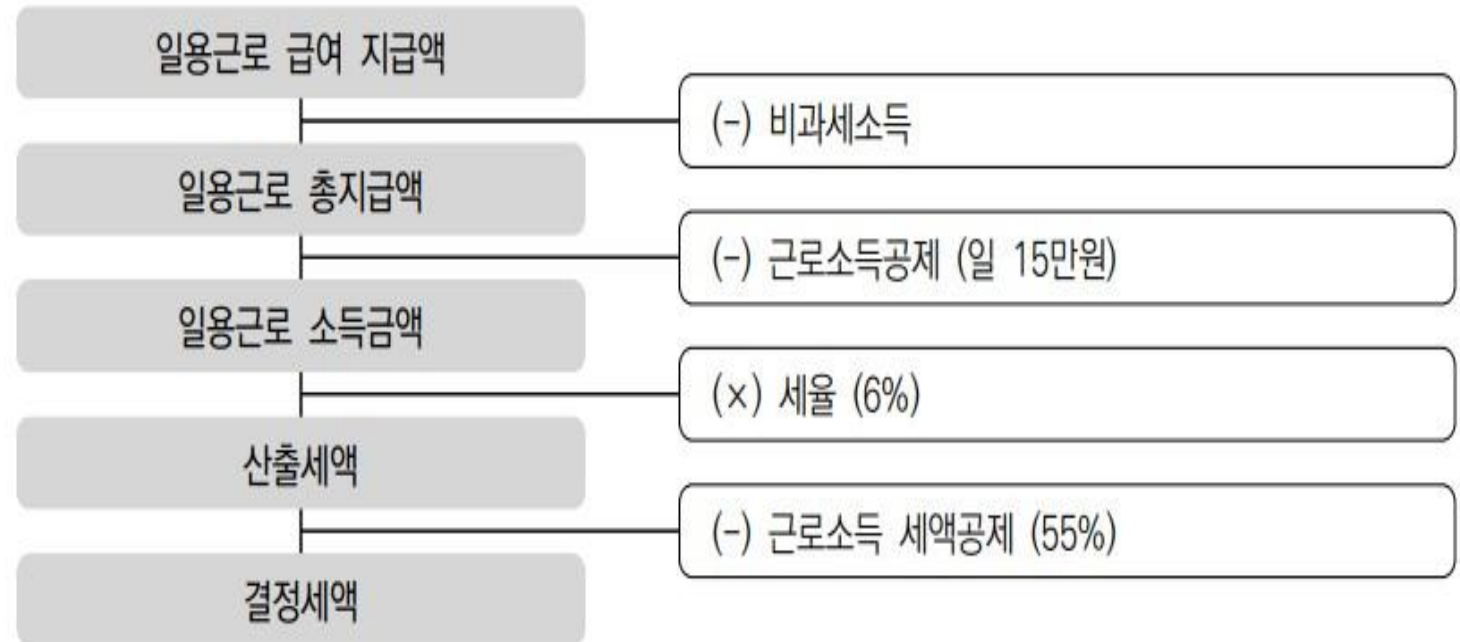
#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 ·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00만 원 이하	6%	-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 (참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

# 공제 항목 주요 내용

#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 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참고) 부양가족 공제가능 요건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요건 판단(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 제외)

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공제가능 요건
종합소득 (①)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sup>1)</sup> 이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sup>2)</sup>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개정)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 확대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 원 <sup>3)</sup> 이하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 선택	
퇴직소득(②)	퇴직금=퇴직소득금액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③)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 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차감 후 100만 원 이하	
합계액			①~③ 합계액 100만 원 이하

1)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 분리과세 대상

2)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3)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총연금액 516만 원-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 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특별소득공제 2

특별 소득 공제	주 택 자 금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p>	<p>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p> <p>&lt;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gt;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p>
			<p>공제 한도액</p>	<p>- '15.1.1. 이후 차입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치식 &amp; 고정금리 : 1,800만원</li>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li>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기타 : 500만원</li> <li>· 상환기간 10년 이상 &amp;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li> </ul> <p>&lt;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gt;</p> <p>-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p> <p>-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p> <p>-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p> <p>&lt;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gt;</p>

# 그 밖의 소득공제 1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 벤처기업 출자: 100%·70%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 그 밖의 소득공제 2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 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기업 30%)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감면 & 세액공제 1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 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3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b>74만원</b></li> <li>•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b>66만원</b></li> <li>•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b>50만원</b></li> </ul>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감면 & 세액공제 2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7세이상)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 계좌	연금 저축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 한도)	
			50세미만	50세이상			
	퇴직 연금	5.5천만원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 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과학 기술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 만기시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감면 & 세액공제 3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2%(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5%(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p>㉠ 난임 시술비</p> <p>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20%**)</p> <p>㉡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p> <p>*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한도 없음</li> <li>·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li> </ul> <p>**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p>	<p>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li> <li>-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li> <li>-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li> <li>-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li> <li>-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의료비 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td> <td>㉠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td> </tr> <tr> <td>나. ㉡ + ㉢ ≥ 총급여액 × 3% &gt; ㉢인 경우</td> <td>㉠ + ㉡ - (총급여액 × 3% - ㉢)</td> </tr> <tr> <td>다. ㉠ + ㉡ + ㉢ ≥ 총급여액 × 3% &gt; ㉡ + ㉢인 경우</td> <td>㉠ - (총급여액 × 3% - ㉡ - ㉢)</td> </tr> </tbody> </table> <p>※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p>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세액감면 & 세액공제 4

교육비	취학전 아동	<p>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p> <p>* 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li> <li>·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li> <li>·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li> </ul>	<p>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p>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세액감면 & 세액공제 5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li> <li>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li> </ul>	
		기부금	법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li> <li>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li> </ul>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li> </ul>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한도</li> <li>·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li> <li>·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li> <li>·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li> </ul>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li> <li>·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li> </ul>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소득의 종류

##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비과세 연금소득

-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 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 유족연금, 장애 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공적연금 과세방법

- ◆ 공적연금
  -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연계 노령·퇴직연금
  - **원천징수** : 연금 지급시 지급 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자가 신고

# 사적연금 과세방법

- ◆ 사적연금(연금계좌)
  - **원천징수** : 연금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연금 수령자가 신고. 이때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
- ◆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사적연금 기준금액
  - 기준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소득세 계산흐름도

연 간 연 금 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6%~45%)

산 출 세 액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급)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원 한도)

---

# 퇴직소득 과세

# 퇴직소득의 종류 & 원천징수

## ◆ 퇴직소득의 종류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선원법·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은 퇴직소득세 비과세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 ◆ 적용방법

- 2020.1.1.이후 퇴직시부터 적용비율 100% 적용

---

## 주요 Q & A

# 근로 제공 기간 해당 금액을 공제

회사를 다니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데 연말 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관련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구분	중점 확인사항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참고) 해당 과세기간 지출 금액에 대해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60세 미만 부모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60세 미만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

# 기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 비과세저축

## ◆ 비과세 저축: 세금 전액 면제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 원 이하	2022.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015.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2015년 가입 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 : 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li> <li>• 종합소득자, 농어민 :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li> </ul> </li> <li>◆ 일반형 : 서민형 이외의 자</li> </ul>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형 : 본인이 직접 운용</li> <li>◆ 일임형 : 운용전문가에게 일임</li> <li>◆ 신탁형 : 운용지시</li> </ul>
운용대상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등
투자손실	◆ 투자손실액만큼 비과세한도 추가 인정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후 납입원금 한도 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li> <li>◆ 3년 미만에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li> </ul>
계약기간	◆ 3년 이상(계약만료일 전 연장 가능)
납입한도	◆ 5년간 총납입금액 1억원 이하(연간 2천만원 이하)
세금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형 : 이자소득 등 합계액 4백만원 이하</li> <li>• 일반형 : 이자소득 등 합계액 2백만원 이하</li> </ul> </li> <li>◆ 저율분리과세 :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한도 초과분</li> </ul>

---

#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해 발간한 안내책자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